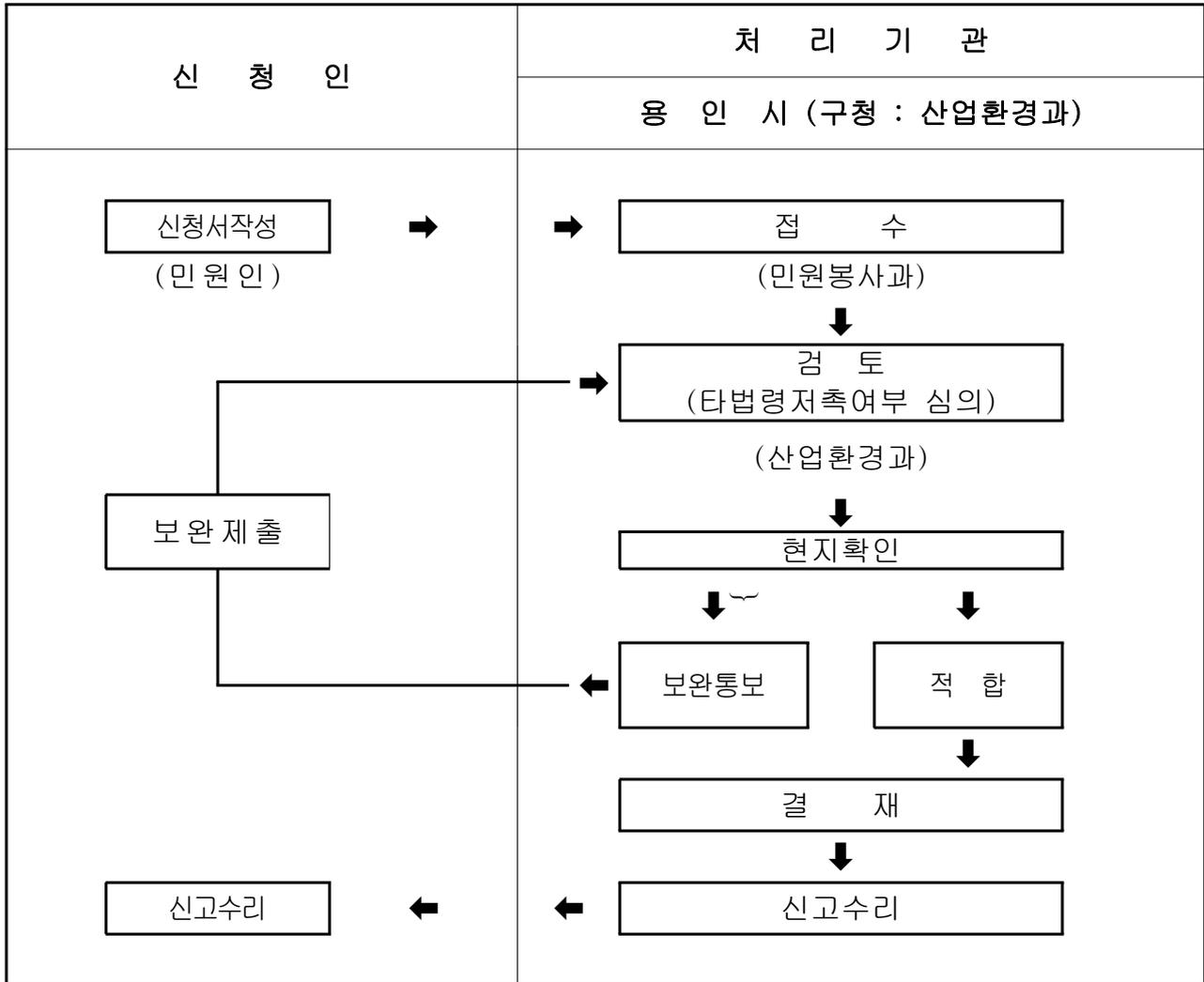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변경)

□ 기본 사항

주 관 부 서	구청 산업환경과	업무담당자(☎)	031-324-5283	
처 리 기 간	3일	관 련 부 서		
수 수 료	-	시	도	중앙기관
면 허 세	동지역:12,000원 면지역: 3,000원			
지역개발공채	-			
기 타				
근 거 법 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비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 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저장시설은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손괴(損壞)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마. 저장시설의 바닥 및 벽은 빗물·토사(土砂)·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 퇴비화시설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툽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사.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 운영기준

-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할 때에는 처리시설·장비등으로부터 가축분뇨가 흘러 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활용 회수자원은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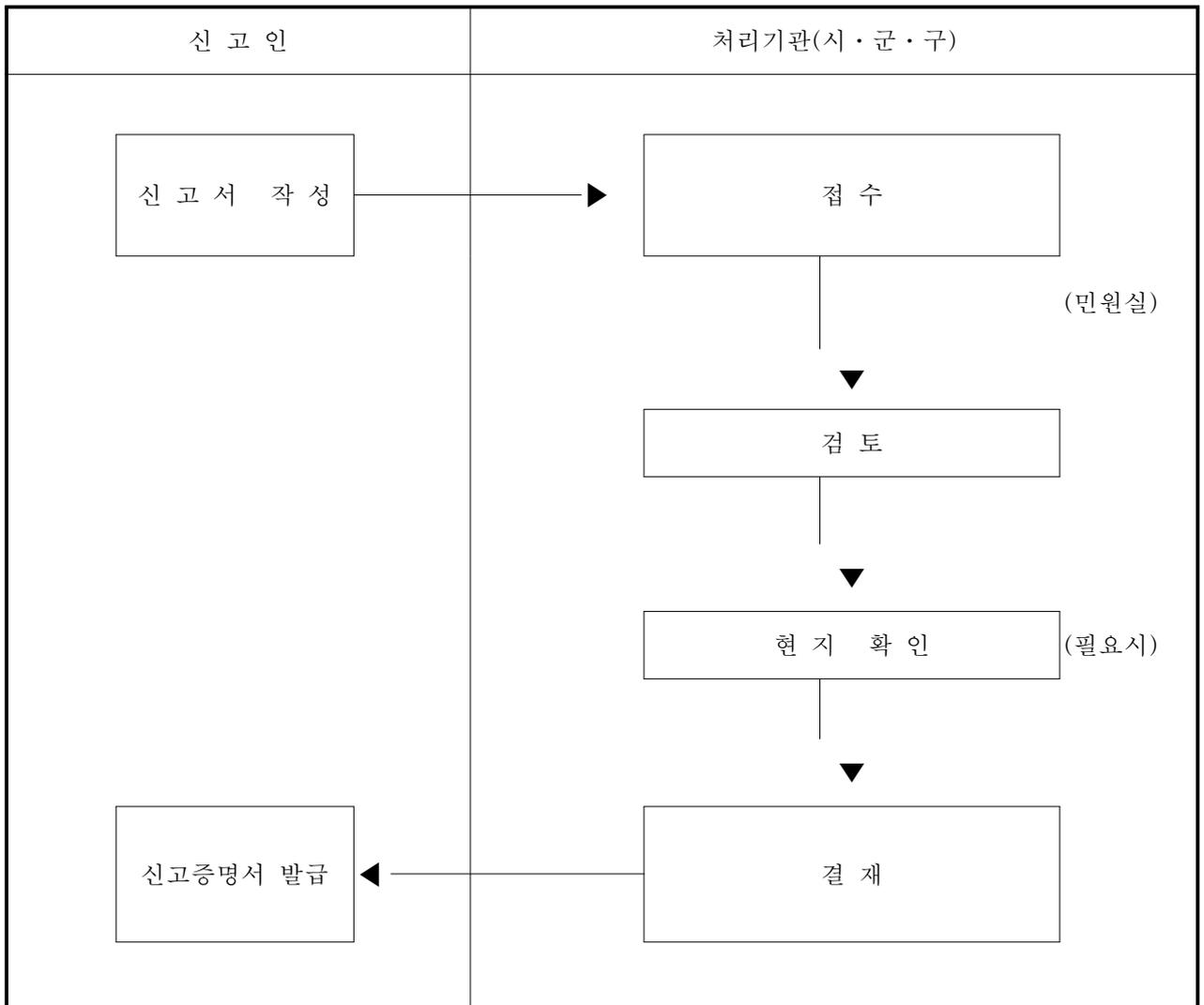
-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관련민원서식

<input type="checkbox"/> 재 활용 가축분뇨 <input type="checkbox"/> 재 활용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 재 활용 대상물질			
⑦ 가용자원 회수방법 <input type="checkbox"/> 액비화 <input type="checkbox"/> 퇴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⑧ 회수자원 이용방법			
⑨ 1일평균 취급량		m ³ (톤)	
⑩ 1일평균 회수량 또는 생산량		m ³ (톤)	
⑪ 주요 발생 지역			
⑫ 초지 또는 농경지			
변 경 내 용	경 전 ⑬ 변		⑭ 변 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 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 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 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 활용 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 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5 일	
보 고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 화:)	
⑤사업장 소재지		(전 화:)	
⑥신고번호			
⑦재활용 방법 및 시설			
⑧개선사항			
⑧개선이행일		년 월 일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